

보 상 계 획 공 고

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316-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『칠곡 노을빛호수 주차장 조성사업』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06월 16일
안 성 시 장



1. 보상계획 내용

사업명(시설명)	사업량	관 련 지 역	대 상 물 건	비고
칠곡 노을빛호수 주차장 조성사업 [교통시설 제90호 주차장]	A=5,934m ²	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316-1번지 일원	토지 : 4필지 물건 : 3건	

2. 사업시행자 : 안성시장

3. 사업시행기간 : 2023년 07월 ~ 2024년 12월(예정)

4. 보 상 시 기 : 2023년 07월 ~ (추후 개별통보)

5. 보상방법 및 절차

- 가.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,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(시도지사와 토지 소유자가 모두 혹은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2인)이 감정평가 후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 산정.
- 나. 같은 법 제6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.
- 다.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 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하며,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음.
- 라. 보상액 개별통지 후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협의계약 체결.
- 마. 소유권(등기) 이전 후 보상금 지급.(계좌입금)
- 바. 개별 통지할 예정이나, 송달할 수 없거나, 송달되지 않아 통지를 받지 못 한 경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.
- 사. 물건(지장물 등)의 경우 실소유자 확인 시 소유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6. 열 랐 기 간 : 보상계획 공고일로부터 14일간(초일불산입)

2023. 06. 16. ~ 2023. 06. 30.

7. 열 랐 장 소 : 안성시청 문화체육관광과 관광팀 ☎031) 678-2493

※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, 조서를 안성시청 문화체육관광과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며, 이의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■ 토지조서

연번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 면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소유자		이해관계인		비고
		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
1	원곡면 칠곡리	315	답	1,524	1,208	이@백	안성시 원곡면 @@@ @@@@-@@			
2	원곡면 칠곡리	316-1	대	459	459					
3	원곡면 칠곡리	316-2	답	3,686	3,491					
4	원곡면 칠곡리	316-3	전	776	776					
계				6,445	5,934					

■ 물건조서

연번	소재지	지번	물건종류	구조 (규격)	면적 (수량)	소유자		이해관계인		비고
		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
1	원곡면 칠곡리	316-1	주택	철콘 (벽돌)	100㎡	이@백	안성시 원곡면 @@@ @@@@-@@			
			부속건물	판넬	18㎡					
			부속건물	판넬	9㎡					

끝.